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4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이언주·민형배·이기헌

소병훈 • 이재관 • 이상식

정성호 · 문정복 · 정진욱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,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.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.

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,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하도록 함(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).
- 나.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함(안 제19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4(약관의 인증)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작성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사업자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
 - 2.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거래규모, 대리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

정거래위원회는 신속히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실시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9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3(표준약관) ① ~ ⑥	제19조의3(표준약관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
	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
	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
	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
	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
	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⑦</u> ~ <u>⑨</u> (생 략)	<u>⑧</u> ~ <u>⑩</u> (현행 제7항부터 제9
	항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9조의4(약관의 인증) ① 사업
	자 및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	우 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
	작성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
	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약관의
	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
	<u>또한 같다.</u>
	1. 사업자가 「독점규제 및 공
	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
	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
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자인 경우

- 2.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거래규모, 대리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히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.

- 1. 제19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아니한 자
- 2<u>.·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